

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60개월
신청인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	
	주소	전화번호		
	대표자	생년월일		
	사업소명			
	사업장소	전화번호		
	담당부서	담당자		
	사업자분류	설계승인번호		
	운반용기종류	제작검사수량		

「원자력안전법」 제7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 제작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2. 제작설비 명세서 1부 3. 시험방법·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4. 시험·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